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502017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 취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신용보증기금

피고1. 건우철강 주식회사

2. 장천건설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7. 2. 24.

판결 선고2017. 3. 17.

주 문

1. 가. A 주식회사와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0. 2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는 A 주식회사에게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2. 가. B과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는 B에게 별지2 목록 순번 2번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3. 가. B과 피고 장천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1. 6.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장천건설 주식회사는 B에게 별지2 목록 순번 3번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는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와 사이에, A의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대출은행으로부터 대출금 합계 1,780,000,000원(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다.

1	2009. 3. 11.	200,000,000	2010. 3. 10.	2009. 3. 12.	중소기업은행	250,000,000
160,000,000	2016. 3. 4.					
2	2011. 5. 12.	374,000,000	2012. 5. 11.	2011. 5. 13.	신한은행	440,000,000
변경 없음	2016. 5. 6.					
3	2011. 5. 12.	765,000,000	2012. 5. 11.	2011. 5. 12.	중소기업은행	900,000,000
731,000,000	2016. 5. 6.					
4	2015. 8. 13.	120,000,000	2016. 8. 12.	2015. 8. 17.	중소기업은행	190,000,000
변경 없음	변경 없음					

2) A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① 보증채무이행금액, ②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12. 12. 1.부터 현재까지는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③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B은 A의 대표이사로서 A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등

- 1) A은 2015. 11. 4. 당좌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원고는 각 대출은행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2015. 12. 7.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합계 1,390,999,663원[= 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위 표 순번 1번 대출채무 161,000,968원(원금 160,000,000원 + 이자 1,000,968원), 순번 3번 대출채무 733,512,604원(원금 730,996,260원 + 이자 2,516,344원) 및 순번 4번 대출채무 120,727,513원(원금 120,000,000원 + 이자 727,513원) 합계 1,015,241,085원, ② 신한은행에 대하여 순번 2번 대출채무 375,758,578원(원금 373,993,799원 + 이자 1,764,779원)]의 대출원리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9,470,140원을 회수하였다.
- 3) 원고는 A 또는 B에 대한 구상권의 보전을 위하여 2015. 12. 2. 4,091,920원, 2015. 12. 15. 756,610원 합계 4,848,530원을 지출한 후 4,109,619원을 회수하였다.

다. A 및 B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공동피고였던 1) A 및 B을 상대로 1,382,271,547원[= 대위변제금 잔액 1,381,529,523원(위 대위변제금 합계 1,390,999,663원 - 회수금 9,470,140원) + 위 회수금 9,470,140원에 대한 하루치 지연손해금 3,113원 + 권리의 보전에 지출한 비용 잔액 738,911원(지출비용 4,848,530원 - 회수금 4,109,619원)] 및 대위변제일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6. 11. 8.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A 및 B에 대하여 "A 및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82,271,547원 및 그 중 1,381,529,523원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2016. 1. 25.(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고, 2016. 12. 17.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A과 B의 재산처분

1) A은 2015. 10. 22. 피고 건우철강 주식회사(이하 '피고 건우철강'이라 한다)에 별지1 목록 순번 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상가를 공동담보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 2015. 10. 22. 접수 제54035호로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 건우철강,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공동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2) B은 2015. 11. 6. 피고 건우철강에 자신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1 목록 순번 3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1. 6. 접수 제322481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건우철강,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3) B은 2015. 11. 6. 피고 장천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장천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15. 11. 10. 접수 제325385호로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장천건설, 채권최고액 3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마. 임의경매절차 진행 경과 및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E 중복)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6. 7. 22. 피고 건우철강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719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7. 27.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 겸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자인 피고 건우철강에 30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2016. 8. 11.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건우철강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8.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합204864호로 피고 건우철강에 대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2) 이 사건 제2, 3 각 근저당권의 설정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F(G 중북)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원고는 2016. 6. 20. 피고들의 위 경매절차에서의 각 배당금출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카단805733호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6. 6. 23.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이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자인 피고 건우철강에 300,000,000원,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자인 피고 장천건설에 49,610,21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중소기업은행은 2016. 7. 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각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6.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1081호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그 소송이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0, 23, 24, 29, 30호증, 을다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A이 원고와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받은 사실, B이 그 당시 A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A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A은 2015. 11. 4. 당좌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12. 7.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 중 원고에게 대위변제책임이 있는 금액만 1,381,529,523원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5. 10. 22. 및 이 사건 제2, 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인 2015. 11. 6.을 기준으로 장래 A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의 A 및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5. 12. 7. A의 이 사건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구상금채권이 성립함으로써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A 및 B에 대한 1,382,271,547원의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A 및 B의 무자력 가) A

A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5. 10. 22. 무렵 A의 재산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1) 적극재산

1	이 사건 각 상가	549,000,000	갑 제11호증
2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I건물 901호, 902호, 903호	831,000,000	갑 제13호증
합계	1,380,000,000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무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다 제1,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2015. 10. 22. 당시 A이 용이하게 변제받을 확실성이 있는 공사미수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A의 세무사가 작성한 사실증명(을다 제8호증)에 의하더라도, A의 2015. 12. 31. 기준 공사미수금채권 합계액이 1,683,688,907원에 불과하므로, 이를 전부 A의 적극재산에 포함시키더라도 A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함에는 변함이 없다.]

(2) 소극재산2)

1	원고	1,382,271,547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위 2010다68084 판결 등 참조).
2	유진기업(주)	497,000,000	갑 제16호증
3	(주)익진엔지니어링	26,000,000	공사대금채무(갑 제17호증)
4	중소기업은행	1,509,000,000	-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2,520,000,000원- 원고의 신용보증액 1,010,996,260원(갑 제18호증)
5	(주)삼표산업	97,000,000	물품대금채무(가압류 청구금액)(갑 제10호증의 1)
6	신한은행	66,000,000	대출채무(가압류 청구금액)(갑 제10호증의 1)
7	피에스개발(주)	394,000,000	공사대금채무(가압류 청구금액)(갑 제10호증의 1)
8	서울보증보험	267,181,866	구상채무(갑 제19호증)
합계	4,238,453,413		

(2) B

B이 이 사건 제2, 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5. 11. 6. 무렵 B의 재산상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가) 적극재산

시가 1,44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아파트(갑 제22호증)

(나) 소극재산

1	원고	1,382,271,547	
2	전문건설공제조합	100,000,000	보증채무(가압류 청구금액)(갑 제10호증의 3)
3	신한은행	66,000,000	보증채무(가압류 청구금액)(갑 제10호증의 3)
4	중소기업은행	1,763,000,000	대출채무 749,000,000원 + 보증채무 1,014,000,000원(갑 제18호증)
5	서울보증보험	202,246,037	보증채무(갑 제19호증)
6	현대저축은행	77,000,000	보증채무(갑 제21호증)
합계	3,590,517,584		

3) 사해행위 A과 B은 위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인 이 사건 각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바, 이러한 담보제공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8084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9461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하여 피고 건우철강은, A이 당시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던 피고 건우철강으로부터 현금거래를 요구받자 건축자재를 계속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마쳐준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건우철강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 사실과 을다 제5, 6,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A 및 B은 A과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피고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기존의 물품대금채무 및 장래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기보다는 단순히 기존 물품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해 마쳐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 건우철강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A의 피고 건우철강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및 어음채무 합계가 이미 7억 5,000만 원을 상회한다. 그런데 피고 건우철강을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600,000,000원에 불과하여 기존 채무의 담보

외에 향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채무까지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② 피고 건우철강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A과 피고 건우철강의 거래는 2016년 10월 말경 약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거래한 것이 전부이고(그 물품대금은 2016. 10. 31.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인 2016. 10. 15. 거래된 철근에 대한 물품대금과 함께 청구되었다),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는 두 회사 사이에 거래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A과 피고 건우철강 사이에 단기간 소액의 거래 이외에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의 설정에 상응하는 계속적 물품공급의 실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후 A 또는 B과 피고 장천건설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4) 사해의사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참조). 앞서 본 A 및 B의 채무초과 정도에 비추어 A의 대표이사인 B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하여 피고들 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A 및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5) 피고 건우철강의 선의의 수익자 항변 피고 건우철강은,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 및 B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건우철강은

2006년경부터 약 9년간 A과의 거래관계를 지속해 온 회사인 점, ② A은 2015. 6. 30.부터 2015. 9. 15.까지 피고 건우철강에 대한 합계 646,373,737원 상당의 물품대금채무를 약속어음으로 결제하여 피고 건우철강으로서 A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은 A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기 불과 열흘 남짓 전에 체결되었고,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신용보증사고 발생 직후에 체결된 점(이전까지 피고 건우철강은 A이나

B로부터 물적 담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을다 제1, 8,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A의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제1, 2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건우철강과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수익자인 피고 장천건설을 상대로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됨에 따라 피고들은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근저당설정등기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사해행위로 취득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이미 실행되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동시에 수익자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 원고의 처분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그 배당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 경우의 원상회복은, 수익자인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청구권을 채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도 통지를 배당금출급청구권의 채무자에게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건우철강은 A에 별지2 목록 순번 1번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A에, 순번 2번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B에게 각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장천건설은 별지2 목록 순번 3번 기재 배당금출급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건우철강은, 이 사건 각 상가 및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 또는 다른 채권자(중소기업은행)의 이익으로 각 배당표가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상회복 방법으로서 위 각 배당금출급채권의 양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배당금이 피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이상 가액배상의 방법으로서 위 각 배당금출급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통지를 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건우철강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비록 위 각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 각 배당금을 배당받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면,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채권은 특정이

가능하고, 원고 또는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의 종결 등의 사유로 가까운 장래에 발생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장래 채권으로서 양도의 대상이 된다.

② 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방법으로서 배당이의의 소와 배당금출급채권의 양도는 요건 내지 절차가 서로 다르다.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스스로 피고 건우철강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하여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건우철강 사이에 그 배당액에 관한 배당이의 소송이 별건으로 계속 중이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 방법이 배당이의의 소에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제2, 3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하여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제3자인 중소기업은행의 배당이의로 말미암아 배당표가 확정되지 않아 피고들이 수령하지 못한 배당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피고들의 배당금출급채권 양도 및 그 채권양도통지가 사실상 유일한 원상회복 방법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수영

판사윤지영

판사이효신

별지

1) 한편 원고는 2016. 7. 12. 다른 공동피고였던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2016. 7. 30. 그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2) A과 B의 각 소극재산(채무액)은 원고 주장 범위에서 인정하였다.